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변 호	521
------------	-----

2023. 02. 27.
주택공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23. 2. 6. 김정 의원 발의 (2023. 2. 9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법령 및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반지하주택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상황임에 따라,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“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”를 포함하여 반지하주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“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”를 포함시킴(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오정균)

- 이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“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”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, 2023년 2월 6일 김

경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- 의안번호 제521호 김경의원안의 검토의견은 이민석 의원이 2022년 10월 19일에 먼저 발의한, 의안번호 제410호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내용에 이미 반지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민석의원안의 검토의견으로 같음함.

< 개정조례안 비교 >

※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추가

현 행 (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)	이민석의원안 (의안번호 11 - 410)	김경의원안 (의안번호 11 - 521)
1.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	2. (현행과 같음)	2. (현행과 같음)
3. 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¹⁾	3. (현행과 같음)	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의 D, E 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. 영 제8조의2의 3,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	4. 침수 우려가 있거나,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

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	02-2180-8204
입 법 조 사 관 최지현	02-2180-8216

-
- 1) 건축규제 완화 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「소규모주택정비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